

## 國際動物命名規約(其 2)

金 熏 洙 譯

### IX. 屬群의 分類群과 그 名稱

#### 第42條 屬群의 分類群

- (a) 包含되는 範疇: 屬群은, 分類의 體系上 科群 바로 밑 그리고 種群 바로 위에 있는데, 屬과 亞屬 두 範疇을 포함한다.
- (b) 根據: 屬群의 各 分類群은 그 模式種을 參照함으로써만 客觀的으로 定義된다(XV).
- (c) 集合群: “集合群”[語彙를 보라]”으로서 알려진 어떤 生物學的으로 하나로 모은 것의 名稱들은 이 規約이 意味하는 바로는, 屬의 名稱들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集合群은 模式種을 要求하지 않는다.

例: *Agamodistomum*, *Agamofilaria*, *Cysticercus*, *Diplostomulum*, *Glaucothoe*, *Sparganum*.

- (i) 이 規約에서, “分類群” 또는 “名稱”이란 用語가 屬 水準에서 쓰일 때에는, 該當 條款은 集合群 또는 그 名稱에도 適用된다. 단, 이것과는 다른 記述이 있거나, 이러한 適用이 不適當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 (d) 屬의 區分: 한 屬의 一次的 區分을 위하여 提案된 一名式 名稱은, 비록 그 區分이 “section” 또는 “division”과 같은 用語로 表現되더라도, 그 名稱이 IV章의 關係條款을 充足한다면, 命名法上 亞屬名의 地位를 가진다.

第43條 範疇의 同等: 屬群內의 諸範疇은 命名法上 同等한 地位에 있다. 즉, 그것들은 같은 規則과 勸告에 따르며, 그 群內의 어느 한쪽 範疇의 分類群에 대하여 만들어지고, 또한 어떤 一定한 模式種에 의거한 名稱은 그래서 다른 쪽 範疇內에서 같은 模式種에 의

1) collective group: 소속하는 屬의 위치는 明白하지 않으나 동경할 수 있는 種들의 集合; 分類學的便宜 때문에 屬群으로서 다루어진다.

거한 分類群에 대하여서도 그 原著 日字 및 著者와 더 부러 有効하다.

#### 第44條 下位의 分類群

- (a) 承名 亞屬: 한 再區分된 屬의 模式種을 포함하는 亞屬은 그 屬과 같은 名稱을 가지며 “承名”亞屬이라 불리운다.
- (b) 承名 亞屬의 變更: 再區分된 屬의 無効한 名稱이 다른 亞屬의 名稱으로 代置될 경우에는 [第23條 e (iii)], 따라서 後者가 承名 亞屬으로 된다.
- (c) 亞屬의 引用: 第6條를 보라.

勸告 44A. 同物異名의 引用: 誤解를 피하기 위하여, 同物異名이나 또는 亞屬 以外의 어떠한 用語도, 二名式名稱의 屬 要素의 種 要素 사이에 引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X. 種群의 分類群과 그 名稱

#### 第45條 種群의 分類群

- (a) 內包되는 範疇: 이 規約의 目的을 위하여, 種群은 種과 亞種 範疇을 포함한다.
- (b) 根據: 種群의 各 分類群은 그 模式標本을 樣本으로 하여서만 客觀적으로 定義된다.
- (c) 亞種 以下의 型: 亞種 以下의 型은 種群으로부터 除外되며 이 規約의 條款들은 그것들에 適用되지 않는다[第1條; 第10條b도 보라].
- (d) 亞種 또는 亞種보다 以下의 地位의 決定: 種보다 낮은 階級の 分類群의 어떤 名稱의 原來 地位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i) 著者가 原來 그 名稱을 만들 때, 그것이 亞種에 適用된다는 것을 明白히 기술하였거나 1961年 보다 以前에, 그 階級을 明白히 기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亞種으로 [다음의 第45條e도 보라], 또

- (ii) 著者が 原來 그 名稱을 만들 때, 그 分類群이 특수한 地理的 地域 또는 地質的 層位的 특징이라고 기술하고 亞種 以下の 範疇에 속한다고 明白히 言及하지 않은 경우에는 亞種으로; 그러나
- (iii) 著者が 原來 그 名稱을 만들 때, 그 分類群이 亞種보다 以下の 階級에 속한다고 明白히 言及하였거나, 1960年 보다 後에 그 名稱이 亞種이라고 明白히 기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亞種 以下の 名稱으로 결정한다.

(e) “變種<sup>1)</sup>”과 “型<sup>2)</sup>”이란 用語의 說明

- (i) 1961年보다 以前, “變種” 또는 “型”이라는 用語의 使用은 어느 것이나 亞種 또는 亞種 以下 階級の 어느 것의 特殊한 記述이라고 說明되어서는 안된다.
- (ii) 1960年보다 後에, “變種” 또는 “型”의 名稱으로서 公衆된 새로운 것은 亞種보다 以下の 階級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第46條 範疇의 同等**: 種群內의 諸範疇는 命名法上 同等한 地位에 있다. 즉, 그것들은 같은 規則과 勸告에 따르며, 그 群內의 各 範疇의 分類群에 대하여 만들어 지고, 또한 어떤 一定한 模式標本에 의거한 名稱은, 그래서, 다른 範疇內에서 같은 模式標本에 의거한 分類群에 대하여 그 原著 日字 및 著者와 더 부러 有効하다.

**第47條 下位의 分類群**

- (a) 承名 亞種: 한 再區分된 種의 模式標本을 包含하는 亞種은 種과 같은 名稱을 가지며 “承名” 亞種이라 불리운다.
- (b) 承名 亞種의 變更: 再區分된 種의 無効한 名稱이 다른 亞種의 名稱으로 代置된 경우에는 [第23條 c (iii)], 따라서, 後者가 承名 亞種으로 된다.

**第48條 二名式名稱**

- (a) 屬의 變更: 最初에 만드러진 以後, 그 種名이 다른 二名式名稱의 部分으로 될 경우에는, 언제나, 그것은 다른 屬으로 移轉된다.
- (b) 條件附 屬名: 어떤 動物學者가 어떤 有効한 種名과 結合시켜서 이미 만드러진 屬名을 使用하여 한 二名式名稱을 公衆하고, 그러나 同時에 그 種名과 結合시켜 새로운 屬名을 條件附로 提案한 경우, 그는 두 二名式名稱을 만든 것으로 간주되며, 이 중에서 前者가 先取權을 가진다.

例: Lowe는 1843年에 屬 *Seriola* Cuvier, 1816 밑에 新種 *gracilis*를 公衆하였다. 그러나 同時에 그 種을 위하여 新屬 *Cubiceps*를 提案하였다. 그는 처음에 二名式名稱 *Seriola gracilis*를, 다음에 二名式名稱 *Cubiceps gracilis*를 만든 것으로 간주된다.

**第49條 틀린 同定**: 種을 잘못 同定하였을 때 사용된 種名은, 비록 그 問題의 두 種이 별개의 屬에 들어 있던지, 또는 나중에 그런 것으로 하더라도, 그 名稱은 잘못 適用된 種을 위해서는 존속될 수 없다(第70條b를 보라).

例: Smith, 1850는 Dupont가 實地 이름을 붙인 것과는 틀리는 種을 "*A-us b-us* Dupont"로서 記録하였다는 것이 發現되었다. 그 種名 *b-us*는, 비록 진짜 *b-us* Dupont와는 다른 屬에 넣더라도, Smith 面前에 있던 種을 表示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 XI. 創 設 權

**第50條 名稱의 著者**: 한 學名의 著者(著者들)는, 有効性의 基準(IV)을 充足시키는 方法으로, 그 學名을 最初로 公衆한(III) 人物(人物들)이다. 단, 出版物의 內容으로 보아 共同著者들 中의 단 한(또는 몇) 사람, 또는 어떤 다른 사람(또는 사람들)이, 그 名稱과 그것을 有効하게 하는 諸條件 兩쪽에 대하여 單獨으로 責任을 진다는 것이 明白하면, 그렇지 않다.

(a) 議事錄 中의 名稱에 대한 例外: 만약 어떤 分類群의 名稱이 어떤 會合의 議事錄 中에서 出版에 의하여 創設된다면, 그 名稱에 責任이 있는 사람이 著者이며, 그 會合의 幹事나 報告者는 著者가 아니다.

**勸告 50A. 議事錄 中의 通報**: 會合의 幹事나 다른 報告者는 印刷 報告書 中에 새로운 分類群의 名稱이나 命名法에 영향을 미치는 通稱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b) 階級の 變更: 科群, 屬群 또는 種群 內에 있어서의 어떤 分類群의 階級 變更은 그 公稱 分類群의 著作權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c) 正當한 修正: 正當한 修正은 그 名稱의 原著者에 돌아간다[第33條 a].

(d) 不正當한 修正: 不正當한 修正은 그것을 公衆한 著者에 돌아간다.

**第51條 著者名의 引用**

(a) 任意의 使用: 著者名은 어떤 分類群의 名稱의 部

1) variety 2) form

분을 구성하지 않으며 그 인용은任意이다.

(b) 인용의 形式: 原著者의 이름은, 引用할 경우에는, 그 學名의 다음에, 句讀點을 사이에 끼우지 않고, 연속시킨다. 단, 節(d)와 勸告 51A에 表示한 경우는 除外된다.

(i) 어떤 學名을 나중에 使用한 사람의 이름은, 引用할 경우, 코머를 使用하지 않는 다른 特殊한 方式으로, 그 學名과 分離되어야 한다.

例: Latreille에 의하여 使用된 *Cancer pagurus* Linnaeus에 관한 參照는 다음과 같이 引用될 수 있다.

*Cancer pagurus* Linnaeus sensu Latreille,

*Cancer pagurus*: Latreille,

또는 어떤 다른 特殊한 方式으로 하지만, 그러나 다음과 같이는 하지 않는다.

*Cancer pagurus* Latreille, 또는

*Cancer pagurus*, Latreille

勸告 51A. 無名義의 著者: 어떤 分類群의 名稱이 無名義로 出版되었지만, 그 著者가 알려진 경우, 그 이름은, 만약 引用한다면, 原著의 無名義를 表示하기 위하여, 모괄호 속에 넣는 것이 좋다.

(c) 貢獻者의 引用: 學名과 그것을 有效하게 하는 條件들이, 그것들을 포함하는 出版物의 著者(들)의 責任이 아니고, 단지 그 著者들 간의 한(또는 몇)사람, 또는 어떤 다른 動物學者의 責任인 경우에는, 그 著者(들)의 이름은, 만약 引用된다면, "B in A" 또는 "B in A & B", 또는 무엇이든 適當한 組合으로 表示되어야 한다.

(d) 새로운 組合에 있어서 둥근 括弧의 使用: 種群의 分類群이 한 一定한 屬 밑에 記述되고 나중에 다른 屬에 移轉되는 경우에는, 그 種群 名稱의 著者名은, 만약 引用된다면, 둥근 괄호 속에 넣어야 한다.

例: *Taenia diminuta* Rudolphi는, *Hymenolepis* 屬에 移轉되었을 때, *Hymenolepis diminuta* (Rudolphi)와 같이 引用된다.

(i) 여기서 둥근 괄호의 使用은 한 公稱屬으로부터 다른 것으로의 移轉에만 適用하며, 亞屬名의 存在, 또는 같은 屬內에서의 階級이나 地位의 어떤 變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勸告 51B. 새로운 結合의 著者名의 引用: 種群 名稱의 原著者名과 그것을 다른 屬으로 移轉한 改正者名을 둘다 引用하려고 할 경우에는, 原著者名을 넣고 있는 둥근 괄호 다음에 改正者名을 오게하는 것이 좋다.

例: *Linnaeus nilotica* (Savigny) McQuin-Tandon.

## XII. 異物同名

第52條 異物同名: 이 規約이 의미하는 바로는, 異物同名이란 같은 屬內의 서로 다른 種群의 分類群, 또는 屬群內나 科群內의 객관적으로 서로 다른 分類群을 表示하는 有效한 名稱들의 綴字가 같은 것이다.

第53條 異物同名의 法則: 어떤 有效한 名稱의 新參 異物同名인 如何한 名稱도 破棄되고 代置되어야 한다.

第54條 異物同名에 들지 않는 名稱: 다음 名稱들은 異物同名에 들지 않는다.

(1) 本規約이 의미하는 有效하지 않는 名稱, 단, 第20條 및 第56條b에 表示한 바와 같은 것은 제외한다;

(2) 動物界의 分類群을 위하여 사용된 적이 없는 名稱;

(3) 動物命名規約에서 제외된 名稱 [第1條]; 및

(4) 原著이건 그後의 것이건 틀린 綴字.

第55條 科群의 名稱: 서로 다른 模式屬에 의거하고, 게다가 同一한 科群名稱들, 또는 接尾語만 다른 科群名稱들은 異物同名들이다.

(a) 類似한 屬名에서 온 異物同名: 科群의 名稱間의 異物同名이 그들의 模式屬의 名稱이 同一한 데서 가 아니라 類似한 데서 由來할 경우에는, 그 件은 審議會에 委託하여야 한다.

例: 두 屬名 *Merope* (昆蟲)와 *Merops* (鳥類)는 各 科名 Meropidae를 생기게하였다. 異物同名을 막기 위하여, 審議會는 *Merope*는 科名 MEROPEIDAE를 구성해야 할 것을 裁定했다(意見 140).

(b) 틀린 綴字로부터의 異物同名: 科群名稱은, 만약 그 異物同名이 以前의 名稱의 틀린 綴字로부터 由來한다면, 新參 異物同名으로서 破棄될 것이 이다.

例: *Psilopa* Fallén에 의거한 PSILOPINAE Cresson, 1925은 *Psilopus* Meigen에 의거하였으며 PSILOPODINAE로 있어야하였던 PSILOPINAE Shiner, 1868의 異物同名으로서 破棄되어서는 안된다.

第56條 屬群의 名稱: 異物同名의 法則은 集合群들을 포함하는, 屬群의 모든 名稱에 適用된다.

(a) 한 文字의 差異: 비록 두 屬群名稱間의 差異가 단 한 文字로 말미암는다 하더라도, 이들 두 名稱은 異物同名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例: 雙翅類의 두 屬 *Microchaetina* Van der Wulp, 1891와 *Microchaetona* Townsend, 1919는 異物同名들이 아니다; 단, 附錄 D3을 보라.

(b) 化石에 주어진 *-ites*, *-ytes*, 또는 *-ithes*로 끝나는 名稱: 古生物學上의 用途를 위하여 屬名의 原語尾를 *-ites*, *-ytes*, 또는 *-ithes*로 바꾸어서 構成하고 化石에만 適用한 屬群 名稱은 異物同名에 들어 간다[第20條].

(c) 亞屬에 대한 屬의 優先權: 同一 日字의 두 異物同名關係에 있는 屬群 名稱 中에서, 屬을 위하여 제안된 것은 亞屬을 위하여 제안된 것에 대하여 優先權을 차지한다.

第57條 種群의 名稱: 異物同名의 法則은, 同一 屬 또는 集合群 밑에, 처음 公表된 種群 名稱(一次 異物同名)이거나 後에 한때 모인 種群 名稱(二次 異物同名)에 적용된다. 단, 第59條c에 表示된 것은 除外된다.

例: 새로운 名稱의 個別的 提案이므로, *intermedius*라 불리우는 다음 公稱 分類群은 서로 一次 異物同名이다.

*A-us intermedius* Pavlov,  
*A-us intermedius* Dupont,  
*A-us albus intermedius* Black, 및  
*A-us concolor intermedius* Schmidt.

(a) 亞屬名: 亞屬名의 存在는 同一 屬 內의 種群間 異物同名에 影響을 주지 않는다.

例: *A-us (B-us) intermedius* Pavlov와 *A-us (C-us) intermedius* Dupont는 一次 異物同名들이다. 그러나 *A-us (B-us) intermedius* Pavlov는 *B-us intermedius* Black의 一次 異物同名이 아니다.

(b) 綴字의 差異: 어떤 公稱屬 內의 種群 異物同名은 屬名의 어떠한 修正이나 틀린 綴字로 말미암아 除去되지 않는다.

(i) 단지 姓으로 말미암은 語尾의 差異는 形容詞型 種群 名稱들이 異物同名인가 어떤가를 決定하는 데 마땅히 無視된다.

(c) 異物同名 관계에 있는 屬들 안의 同一 名稱: 異物同名인 名稱을 가지는 서로 다른 屬에 처음부터 또는 나중에 위치하게 된 두 同一한 種群 名稱 사이에는 異物同名 關係가 존재하지 않는다.

例: *Noctua* (昆蟲)와 *Noctua* (鳥類)는 異物同名이다. 그러나 *Noctua variegata* Jung (昆蟲)과 *Noctua variegata* Quoy and Gaimard (鳥類)는 그렇지 않다.

(d) 한 文字 差異: 第58條에 列學한 것을 除外하고는, 한 文字의 差異는 異物同名關係를 방지하기에 充分하다.

例: *Raphidia londinensis*와 *Raphidia londonensis* (同一 起原과 意味의 用語인 *Londinium*과 *London*에서 由來함) 및 *Chrysops calidus*와 *Chrysops callidus* (서로 다른 起原과 意味에서 由來함)는 異物同名이 아니다; 단 附錄 D5를 보라.

(e) 亞種에 대한 種의 優先權: 同一 日字의 두 異物同名關係에 있는 種群 名稱들 中에서, 種을 위하여 제안된 것은 亞種을 위하여 제안된 것에 대하여 優先權을 가진다.

第58條 一定치 않는 綴字: 同一 起原과 意味를 가지며 같은 公稱 屬이나 集合群 中에 引用된 둘 또는 그 이상의 種群 名稱들은 만약 綴字에 있어서의 唯一한 差異가 다음의 어느 것으로 되어 있으면 異物同名으로 간주되므로 되어 있다(區別的 發音 符號나 다른 符號에 관해서는 第27條와 32條를 보라):

- (1) *ae*, *oe*, 또는 *e*의 使用(이를테면, *caeruleus*, *coeruleus*, *ceruleus*);
- (2) *ei*, *i*, 또는 *y*의 使用(이를테면, *cheiropus*, *chiropus*, *chyropus*);
- (3) *c* 또는 *k*의 使用(이를테면, *microdon*, *mikrodon*);
- (4) 子音의 氣音 또는 非氣音(이를테면, *oxyrhynchus*, *oxyryncus*);
- (5) *t* 앞 *c*의 有無(이를테면, *auctumnalis*, *autumnalis*);
- (6) 單一 또는 重複 子音의 使用(이를테면, *littoralis*, *littoralis*);
- (7) *f* 또는 *ph*의 使用(이를테면, *sulfureus*, *sulphureus*);
- (8) 複合單語에 있어서의 서로 다른 連結 母音의 使用(이를테면, *nigricinctus*, *nigrocinctus*);
- (9) 半母音字 *i*를 *y*, *ei*, *ej*, 또는 *ij*로 改字하기;
- (10) 姓氏 屬格의 語尾 *-i* 또는 *-ii*(이를테면, *smithi*, *smithii*);
- (11) 地理的 名稱의 接尾語 *-ensis* 또는 *-iensis*(이를테면, *timorensis*, *timoriensis*); 및
- (12) 特別한 例로서 다루어지는 世帯의 名稱: *saghalinensis*와 *sakhalinensis*; *sibericus*와 *sibiricus*; *tianschanicus*와 *tianshanicus*.

第59條 一次 및 二次 異物同名[第57條]

(a) 一次 異物同名: 新參 一次 異物同名인 種群 名稱

은永久히 破棄되어야 한다.

(b) 二次 異物同名 : 新參 二次 異物同名인 種群名稱은, 問題의 두 種群 分類群이 같은 屬이라고 믿는 어느 動物學者에 의해서도 破棄되어야 한다.

(c) 二次 異物同名的 復活 : 二次 異物同名으로서 1960年보다 後에 破棄된 名稱은, 어느 動物學者가 問題의 두 種群 分類群이 같은 屬이 아니라고 믿을 때에는 언제나 有効한 名稱으로서 復歸되어야 한다. 단 다른 理由로 無効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i) 이러한 경우 그 二次 異物同名的 代身으로 제안된 名稱은 後者의 新參 客觀 異物同名으로 된다.

例 : *A-us niger* Smith, 1960는 *B-us niger* Dupont, 1950와 같은 屬이라고 믿어진단, 그리고 *B-us*로 移轉되었을 때 新參 二次 異物同名으로 되고, *B-us ater* Jones, 1970로 改名된다. 만약 後에 *A-us niger* Smith, 1960가 *B-us niger* Dupont, 1950과 같은 屬이라는 것이 그 以上 더 믿어지지 않는다면, 前者인 種名이 다시 使用되어야한다. 그때에 *B-us ater* Jones, 1970는 *A-us niger* Smith, 1960의 新參 客觀 異物同名으로 된다.

第60條 破棄된 異物同名的 交替 : 破棄된 異物同名은 이미 있는 有効한 名稱으로, 또는, 이러한 名稱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名稱으로 交替되어야 한다.

(a) 同物異名을 가지는 新參 異物同名 : 만약 破棄된 異物同名이 하나 또는 그 以上이 有効한 同物異名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採用되며, 그 자체의 著者名과 日字를 수반한다.

(i) 主觀 同物異名은 그것이 破棄된 名稱의 同物異名으로 간주되는 限 交替 名稱으로서의 適當性을 保有한다.

(b) 同物異名을 가지지않는 新參 異物同名 : 만약 破棄된 異物同名이 既知의 有効한 同物異名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名稱으로 交替되어야 한다. 이 세 名稱은 後에 認定될 어떤 同物異名과 先取權을 다투게 될 것이다.

### XIII. 模式 概念

第61條 模式의 分類群에 대한 關係 : “模式”은 學名의 適用을 결정하는 引證의 基準을 준다. 分類群의 核心이며, 그 名稱의 근거가 되는 模式은 客觀的이고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分類群의 限界는 主觀的이고 변하기 쉽다. 한 公稱種의 模式은 하나의 標本이고, 한 公稱屬의 模式은 하나의 公稱種이고, 한 公稱科의 模式은 하나의 公稱屬이다. 各 分類群은 실제로 또는 潜在的으로 그 模式을 가진다. 어떤 分類群의 模式은 一旦 이 規約의 諸條款에 따라 固定되면 변경되지 않는다. 단 審議會의 全權 行使에 의한 경우는 例外이고 [第79條], 또는 第75條의 條款下에서 種群 分類群에 있어서는 例外이다.

(a) 承名 下位 分類群의 模式 : 어떤 分類群의 模式은 만약 그 承名 下位 分類群이 있다면, 그것의 模式이기도 하며, 또 그 逆도 成立된다. 따라서, 한 쪽의 選定은 다른 쪽의 選定을 의미한다.

(i) 만약, 다른 模式들이, 어떤 公稱 分類群과 그 承名 下位 分類群을 위하여 同時에 選定된다면, 前者를 위한 選定이 優先權을 차지한다.

(b) 模式과 同物異名 : 만약 두 分類群이 同一 模式에 의거한다면, 그들의 名稱들은 客觀 同物異名이다. 만약 서로 다른 模式을 수반하는 두 分類群이 主觀的으로 하나의 分類 單位로 統合된다면, 그들의 名稱들은 主觀 同物異名이다.

### XIV. 科群의 模式

第62條 適用 : 이 章의 諸條款은 科群의 모든 範疇에 同等하게 適用된다.

第63條 科群 分類群의 模式 : 科群의 各 分類群의 模式은 科群 名稱이 의거한 公稱屬이다 [第35條b, 39條, 40條].

第64條 模式屬의 選擇 : 새로운 科群 分類群을 創設하는 動物學者는 模式屬으로서 包含되는 公稱屬 중의 어떠한 것이라도 선택하는 自由를 가지며, 그 公稱屬은 가장 오랜 名稱을 가진 것일 必要는 없다.

勸告 64A. 模式屬은 잘 알려져 있어야 한다 : 가능한 限, 科群 分類群을 創設하는 動物學者는 잘 알려져 있는 동시에 또 그科의 代表的인 한 屬에 의거하는 것이 좋다.

第65條 模式屬의 同定

(a) 假定된 올바른 同定 : 새로운 科群 名稱을 公表하는 著者가 문제의 分類群의 公稱模式屬은 바르게 同定하였다고 假定되어야 한다.

(b) 틀린 同定 또는 變更 概念 : 만약 科群 分類群의 公稱 模式屬이 잘못 同定된 模式種 [第70條]에 의

거하였다는 것이 증명되든지, 또는 만약 公稱 模式 屬은 後에 確定한 것이 이미 받아들인 種名 名稱의 意味를 混亂케 한 경우에는, 이 같은 建議書에 委託되어야 한다.

## XV. 屬群의 模式

第66條 適用: 이 章의 條款들은 屬 및 亞屬 的階의 同等하게 適用된다. 그러나 模式 種을 要求하지 않는 集合群(第42條c)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 第67條 一般 條款

(a) 屬群 分類群의 模式: 各 公稱屬의 模式은 “模式 種”으로서 알려진 한가지의 公稱 種이다(第42條c).

勸告 67A. 術語: “模式種”이란 術語 또는 다른 術語로 最高하게 同義인 術語 만이 屬의 模式을 가리키는 데 使用되어야 한다. “遺傳子型”이란 術語는 이런 目的을 위하여 決코 使用되어서는 안된다.

(b) 模式 選定の 種類: 어떤 한 公稱屬의 模式種은, 만약 그것이 原出版物에서 明確히 選定되던(第68條a), “原選定에 依한 模式”이라 불리우고, 만약 第68條의 (b) 처지 (d) 條款의 適用에 의하여 決定되면 “指示에 의한 模式”이라 불리우고, 또 만약 公稱屬의 創設後에 選定되던 [第69條] “後選定에 의한 模式”이라 불리운다.

(c) 選定: 模式의 確定에 關聯된 “選定”이란 術語는 엄밀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分明하지 못하거나 制限된 方式으로 이루어진 選定은 無効하다.

(i) 屬의 한 例로서의 種의 言及은 模式選定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ii) 特殊한 構造에 對하여 屬의 “type” 또는 “typical”이라 言及하는 것은 模式選定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例: 다음과 같은 記述의 어느것도, 本章에서 의미하는 바로는, 模式選定이라고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A-us b-us*는 아마 *A-us*의 模式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A-us b-us*는 屬 *A-us*의 模式的인 例이다”; “*A-us b-us*의 앞받개의 起原은 屬 *A-us*의 模式的인 것이다.”

(d) 承名 亞屬의 模式: 第61條a를 보라.

(e) 模式種의 客觀的 同物異名: 만약 어떤 屬의 模式인, 한 公稱種이 新參 客觀 同物異名이라는 것이 발견되면, 古參 同物異名이 문자의 屬의 模式種의 名稱으로서 引用되어야 한다.

例: *Astacus marinus* Fabricius, 1775는, 原來 屬

*Homarus* Weber, 1795 속에 包含된 種들의 한 가지인데, *Homarus*의 模式種으로서 選定되었다. 그런데, *Astacus marinus*는 *Cancer gammarus* Linnaeus, 1758의 新參 客觀同物異名이다, 따라서 後者は *Homarus*의 模式種으로서 引用되어야 한다.

(f) 原著者의 措置: 새로운 公稱屬을 創設할 때에는 原著者의 記述이나 다른 措置 만이 다음과 같은 것을 決定하는 데 力이 있다.

(i) 模式種이 第68條의 條款 (a)에서 (d)에 따라 選定되었는가 또는 指示되었는가 어떠한가, 및

(ii) 어떤 種이, 第69條a의 意味에 있어서, 原來 包含된 種인가.

(g) 屬의 創設에 관한 틀린 引用: 公稱屬을 위하여 模式種을 選定함에 있어서, 비록 어떤 著者가, 그 屬의 最初의 創設이나, 그 屬에 대한 公稱種의 切明白한 引用을 表示한 著者 또는 日字 以外的의 다른 著者와 日字를 인용하더라도, 만약 그 種이 適當하다면, 그가 模式種을 妥當하게 選定하였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例: *A-us Dupont*, 1790은, 模式種을 選定하거나 指示함이 없이 創設된 것인데, 其後의 著者 Smith, 1810의 著作 때문에 가장 잘 알려져 있다. 後에 *b-us*가 “*A-us* Smith, 1810”의 模式種으로서 選定되는 경우, 만약 *b-us*가 *A-us*의 模式種으로서 適當하다면, 그 選定은 *A-us* Dupont, 1790를 위하여 有効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h) 除外: 새로운 公稱屬이 創設되었을 때, 包含되지 않았던 公稱種, 또는 未確定種 혹은 所屬位置 不明種 으로서 引用된 公稱種은 그 屬의 模式種으로서 有効하게 選定되거나 指示될 수 없다.

(i) 交替名稱: 만약 어떤 動物學者가 既存 名稱의 交替名稱으로서 새로운 屬名을 明確히 제안한다면, 兩 公稱屬은 同一 模式種을 가져야 하고, 또한 下記 (i)에 따라야 하며, 어떠한 反對 記述이 있어도, 어느 한쪽을 위한 模式確定은 다른 쪽에도 適用된다.

例: *B-us* Schmidt, 1890는 新參異物同名 *A-us* Medina, 1880의 交替 名稱으로서 明確히 提案되었으나 Dupont, 1860 대신에 提案된 것이 아니다. 만약 *x-us*가 *A-us*의 選定된 模式種이라면, 바로 그 事實에 의하여 *x-us*는 *B-us*의 模式種이 된다.

(i) 模式種은 以前의 公稱屬의 模式으로서 確定하기에 適當한 種이어야 한다.

(ii) 한 屬名의 訂正은, 合法的이건, 非合法的이건 間에 原著 名稱의 한 客觀 同物異名이러, 과다의 同一 模式種을 가진다.

(j) 잘못 同定된 模式種 : 만약 選定되었거나 指示된 模式種이 後에 잘못 同定되고 있었다는 것이 發見 되면, 第70條의 諸條款이 適用된다.

(k) 屬들의 併合 : 둘 또는 그 以上の 屬을 併合하여 하나의 分類學上의 屬으로 합한 것은 包含되는 어떠한 公稱屬의 模式種을 變更하지 않는다(XIII), 그리고 이 合成된 屬의 模式種은 그 古參 措戔要素인 公稱屬의 模式種이 된다.

第68條 原著에서 確定된 模式種 : 本條의 條款들은 다음의 優先 順序로 適用된다.

(a) 原選定 : 만약 하나의 새로운 公稱屬이 創設된 때, 하나의 公稱種이 그것의 模式種으로서 明確히 選定되면, 어떤 다른 考慮에 及하지 않아, 그 種은 模式種으로 된다(原選定에 의한 模式).

(i) "gen.n., sp.n." 또는 이것과 同 同等단 記號方式으로서, 1931年보다 以前에, 새로운 創立된 公稱屬에 包含되는 새로운 公稱種들 中의 단 하나에 適用된 것은 만약 다른 模式種이 選定되지 않았다면, 原選定으로서 解釋되어야한다.

(b) *typicus* 또는 *typus*의 使用 : 만약, 하나의 새로운 公稱屬이 創設된 때, 포함되는 새로운 種들 中의 하나가 *typicus* 또는 *typus*로 불리우면 그 種은 模式種이다.

(c) 單一模式 : 하나의 公稱種으로써 처음에 創立된 屬은 그 種을 그것의 模式으로 取한다. 이때 그 著者가 그 屬이 자기가 이름을 붙이지 않은 다른 種을 包含한다고 생각하였던 말았든, 또 同物異名, 亞種, 無効한 名稱, 그리고 의심스럽게 包含되거나 同定된 種들을 引證하였던 말았든 相關하지 않는다(單一模式에 의한 模式).

(d) 反覆名稱 : 만약 어떤 새로 創設된 公稱屬이 그 原來 包含된 公稱種들 中에 그 種名 또는 亞種名으로서, 有効한 名稱이든 引證된 同物異名이든 間에, 그 屬名을 가지는 것을 포함하면, 그 公稱種이 바로 그 事實에 의하여 模式種이된다(完全反覆名稱에 의한 模式).

(i) 1931年보다 以前에 創設된 한 公稱屬 속에 原來 包含되었던 種들 中의 단 한 種의 同物異名表 中에 만약 그 새로운 屬名과 同一한 한 單語로 된 1758年 以前 名稱이 引用되어 있으면, 그 公

稱種은 模式種이라고 推定된다(인쇄의 反覆名稱에 의한 模式).

第69條 原著에서 確定되지 않은 模式種 : 本條의 條款들은 다음 같은 優先 順位로, 1931年보다 以前의 原來 選定되었거나 指示된 模式種이 없이 創設된 公稱屬에만 適用된다.

(a) 後의 選定 : 만약 어떤 著者가 公稱屬을 創設하였지만 그 模式種을 選定 또는 指示하지 않았다면, 動物學者는 누구나 後에 模式種으로써 原來 包含되어 있던 公稱種들 中의 하나를 또는 原公稱種이 없는 경우에는 後에 처음으로 그屬에 속하는 것으로 한 것들 中의 하나를 選定할 수 있다(後選定에 의한 模式).

(i) 이 條款이 意味하는 바로는, "原來 包含된 種"이라 함은 새로 創設된 公稱屬 속에 名稱으로써 實際 引用된 것들 만을 意味한다. 단, 有効한 名稱(亞種, 變種, 型을 包含함)이든지, 同物異名이든지, 또는 以前에 創設된 種의 種名 同定을 指適한 것이라도 좋다(第70條b).

(ii) 만약 그 屬이 創設된 當時 公稱種이 포함된 것이 없다면, 後에 처음으로 明白히 그 屬에 所屬시킨 公稱 種群의 分類群들이 唯一한 原來 包含된 種들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1) 種의 名稱을 포함하는 出版物을 引用하기만 한 것은 單獨으로는 公稱屬 內의 內容線을 構成하지 않는다.

(2) 만약 단 하나의 公稱種이 後에 처음으로 한 屬에 所屬된다면, 그것은, 바로 그 事實에 의하여 後 單一模式에 의한 模式種이 된다.

(3) 만약 둘 또는 그 이상의 公稱種들이 同時에 한 公稱屬에 所屬케 되면, 모두 後模式 選定을 위하여 同等하게 適當하다.

(iii) 어떤 公稱屬에 대하여 前에 有効 模式 選定이 없는 경우에, 만약 어떤 著者가 原來 包含된 公稱種들 中의 하나가 模式(또는 模式種)이라는 것을 記述한다면, 그 理由가 正常하든 不當하든, 또 만약 그 自身이 그것을 模式種으로서 받아들인 것이 明白하면 그 著者는 模式種으로서 原來 包含된 公稱種들 中의 하나를 選定한 것으로 간주된다.

(iv) 만약 어떤 著者가 原來 包含되지 않았던 公稱種을 模式種으로서 選定하였다(또는 他 著者의 選定을 받아들인다)면, 또한, 만약 同時에

그가 그 種을 原來 包含된 種들 中의 하나와 同物異名으로 하였다면, 그의 措置는 그 屬의 模式種으로서 後者를 選定한 것으로 된다.

(v) 어떤 公稱種은, 다른 屬의 模式種이라는 理由로 模式種으로서의 選定을 위하여 不適當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vi) 文獻 記錄 出版物 속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後選定은 만약 모든 다른 面에서 有効하다면 容認된다.

**勸告 69A. 圖示된 種의 優先**: 어떤 屬에 대한 模式種을 選定함에 있어서, 動物學者는 適當하게 圖示된 種에 優先을 주어야 할 것이다.

**勸告 69B. 模式種 選定時의 其他 考慮**: 模式種을 後選定함에 있어서, 動物學者는 優先順으로 列擧한 다음 勸告를 따라야 할 것이다.

(1) 린네의 屬인 경우에는, 그의 가장 흔한 種, 또는 藥用上 重要な 것(린네의 原則 246, *Critica Botanica*, 1737)을 選定해야 할 것이다.

(2) 만약 原來 포함되었던 公稱種들 中의 하나의 名稱 또는 그것의 한 同物異名이 屬名과 事實上 같든지, 또는 같은 語源 또는 意味의 것인 경우에는 그 種이 模式種으로서 選定되어야 할 것이다(事實上的 反覆名稱에 의한 模式), 단, 이러한 選定이 다른 要因들로 말미암아 強力히 反對 證明이 되는 경우는 除外된다.

例: *Bos taurus*, *Equus caballus*, *Ovis aries*, *Scomber scombrus*, *Sphaerostoma globiporum*; *Dipetalonema dipetalum*은 한쪽 性만이 記載되고, 詳細히 연구되지 못한 單一 標本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反對 證明이 있다고 본다.

(3) 만약 原來 包含된 公稱種들 中의 몇가지가 다른 屬으로 移轉되어 있었다면, 優先은 適合하다면 한 殘留 種에 주어지야 할 것이다(除去에 의한 選擇).

(4) 往적으로 成熟한 標本에 의거한 種은, 一般的으로, 幼生 또는 다른 狀態로 未成熟한 標本에 의거한 것에 대하여 優先을 차지한다.

(5) *communis*, *vulgaris*, *medicinalis*, 또는 *officinalis*라고 이름지은 種이 優先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6) 가장 잘 記載된 種, 가장 잘 圖示된 種, 가장 잘 알려진 種, 또는 가장 쉽게 入手할 수 있는 種, 또는 模式 標本을 보기 쉬운 種이 優先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7) 만약 한 屬에 한 群 以上の 種이 認定된다면, 可能的 限 큰 群에 소속하는 種이 優先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de Candolle의 規則).

(8) 寄生動物의 屬에 있어서, 사람, 또는 經濟적으로 重要な 動物, 또는 흔하고 널리 分布하는 宿主 種에 寄生하는 種이 優先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9) 모든 다른 事項이 同等할 때에는, 그 公稱屬의 著者에게, 그 屬名이 公表되기 前부터 잘 알려진 種이 優先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10) 만약 어떤 著者가 習慣上 "chef de file"로서 처음에 主役的 또는 典型的 種을 놓고, 다른 것을 그것과 비교하여 記載하였다면, 그 事實은 模式種의 選定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1) 만약 어떤 著者가 模式種을 그 位置에 의하여 表示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면 ("第一番 種 規則") 그가 引用한 맨 처음의 公稱種이 模式種으로서 選定되어야 할 것이다.

(12) 모든 다른 事項이 同等할 때에는, 그 著作, 面, 또는 行에 있어서 맨 처음에 引用된 種이 優先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位置의 先行).

**勸告 69C. 模式種의 引用**: 1931年보다 以前에 創設된 公稱屬을 위하여 模式種을 選定할 때에는, 動物學者는 그 種의 名稱을, 우선 그 原屬의 二名式名稱대로 引用하고, 다음에 이것과 다르다면, 現行 二名式名稱대로 引用해야 할 것이다. 그는 그 種이 創設된 著作에 대하여 參考文獻을 表示해야 할 것이다.

**第70條 模式種의 同定**: 어떤 著者가 (1) 새로운 屬을 創設할 때 그 新屬에 所屬시키거나, (2) 새로운 또는 이미 創設된 屬의 模式種으로서 選定하는 公稱種은 그 著者가 바르게 同定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a) **잘못 同定된 模式種**: 만약 어떤 動物學者가 이러한 種이 잘못 同定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는 그 件을 審議會에 委託하여야 한다. 審議會는 (必要하면 그것의 全權을 行使하여 [第79條] 模式種으로서 다음의 어떤 種이, 그 判斷으로서, 命名法의 安定성과 齊一성에 가장 잘 所用되겠는가를 決定한다.

(i) 模式 選定時에는 잘못 命名되었지만 실제로는 包含되는 公稱 種; 또는

(ii) 그 種의 同一性이 疑心스러운 경우에는, 잘못 同定이 發見된 당시 널리 알려진 屬名에 따

다 選擇된 種; 또는

(iii) 잘못된 同定에 관계 없이, 選定者가 命名한 種.

(b) 잘못된 同定을 故意로 使用하기: 만약 새로운 公稱 屬을 위한 模式이 前에 創設된 種이지만, 그 選定者가 前著者의 잘못된 慣用에 따라 그 種名을 使用한다는 것을 記述하면, 그 模式種은, 名稱을 바꾸게 가진 種이 아니라, 그 選定者의 面前에 실지로 있던 種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i)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公稱屬의 著者는 새로운 公稱種도 創設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그 公稱種은 새로운 公稱屬 所屬이 되고, 잘못 同定되었던 種과 같은 種名을 가진다.

例: 만약 Jones, 1900가 新屬 *C-us*의 模式種으로서, *A-us b-us Dupont sensu Schmidt, 1870*와 같은 形式으로 引用한 種을 選定한다면, *C-us*의 模式種은 Jones의 面前에 있던 種이고, Dupont에 의해 命名된 것은 아니며, 그 名稱은 *C-us b-us Jones, 1900*이라고 引用되어야 한다.

### XVI. 種群의 模式

第71條 適用: 이 章의 條款들은 種群內의 모든 範疇에 同等하게 適用된다.

第72條 一般 條款

(a) 種群 分類群의 模式: 種群의 各 分類群의 模式은 單 하나의 標本이다, 단, 단지 하나의 原 標本 또는 模式系列에서 選定된 標本(完模式<sup>1)</sup> 後模式<sup>2)</sup>), 또는 하나의 新模式<sup>3)</sup>[第45條b]이다.

(c) 模式系列: 한 種의 模式系列은 그 著者가 그 種의 근거로 삼은 모든 標本들로 구성된다. 단, 그 著者가 變形이라고 提及한 것, 또는 그 公稱種과 不分明하게 關聯시킨 것, 또는 明白히 그 種에서 除外된 것은 除外한다.

(d) 이미 模式으로 되어 있는 標本: 한 標本이 이미 하나의 公稱種의 模式으로 되어 있다는 事實은 그 標本이 다른 種의 模式으로 選定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e) 交替 公稱種의 模式: 만약 어떤 著者가 既存 名稱의 交替名으로서 한 새로운 種名을 明白히 제안하였으나, 同時에 그것을 特定の 標本에 適用한다면, 交替 公稱種의 模式은 既存 公稱種의 模式이

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어떠한 相反하는 模式標本の 選定 또는 交替名稱의 다른 分類學的 慣用은 無視된다.

(e) 承名 亞種의 模式: 第61條a를 보라.

(f) 模式의 價値: 完模式, 總模式<sup>1)</sup>, 後模式, 및 新模式은 모든 動物學者와 安全保管 責任이 있는 人士들에 의하여 科學上의 財產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勸告 72A. 研究機關의 保管: 完模式 또는 後模式을 選定하는 動物學者는 그것을 安全하게 保管하고 또한 研究 目的으로 쉽게 利用할 수 있는 博物館이나 다른 研究機關에 供託해야 한다. 新模式을 博物館이나 다른 研究機關에 供託하는 것은 命命의이다[第75條c(6)].

勸告 72B. 라벨 붙이기: 完模式, 後模式 또는 新模式을 選定하는 動物學者는 그 地位를 明白히 指示하는 方法으로 그 標本에 틀림이 없게 라벨을 붙여야 한다.

勸告 72C. 라벨의 情報: 完模式, 後模式, 또는 新模式을 選定함에 있어서 動物學者는 장차 그 標本の 認定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그 標本에 따르는 라벨에 나타난 모든 情報를 公表해야 한다.

勸告 72D. 研究機關의 責任: 模式을 供託 받은 모든 研究機關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1) 模式들을 틀림 없이 認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明白히 標識가 붙여져 있는가를 확인할 것;
- (2) 그것들의 安全한 保管을 위하여 모든 必要한 措置를 취할 것;
- (3) 研究를 위하여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것;
- (4) 그것을 所有 또는 保管하는 模式材料의 目錄을 出版할 것; 그리고
- (5) 가능한 限, 動物學者가 要求할 경우에는, 模式에 관한 情報를 전할 것.

勸告 72E. 模式 產地: 模式 產地를 選定하거나 限定하는 著者는 다음 基準들 中の 하나 또는 그 以上에 의거하여 措置해야 한다.

- (1) 그 分類群의 原記載;
- (2) 原材料에 수반되는 메타;
- (3) 採集者의 노트, 旅行日記, 또는 私信, 및
- (4) 最後의 手段으로서, 그 種의 既知의 分布區域內에 있는 產地들 또는 그 種이라고 同定된 標本들이 採集된 產地들을 取할 것.

만약 模式產地가 틀리게 選定되었는지 限定되면, 그것은 訂正되어야 한다.

1) holotype 2) lectotype 3) neotype

1) syntype

第73條 完模式과 總模式

- (a) 單一 標本: 만약 한 公稱種이 單一 標本에 의거한다면, 그 標本은 “完模式”이다.
- (b) 特記된 模式: 만약 어떤 著者가 어떤 새로운 公稱種을 記載함에 있어서, 單 하나의 標本이 “그 模式”이라고 記述하든지, 또는 어떤 同等한 表現을 使用한다면, 그 標本은 完模式이다.
- (c) 總模式: 만약 어떤 새로운 公稱種이 (a)와 (b) 條款下에서 完模式을 가지지 않는다면, 模式系列의 모든 標本들은 “總模式”이며, 命名法上 同等한 價値가 있다.
  - (i) 總模式에는 “複模式”<sup>1)</sup>(總模式的 意味에서), “模式”, 또는 어떤 다른 術語로써 表記한 라벨이 붙은 標本, 또는 同定 라벨이 없는 標本, 또는 著者가 보지못했지만, 그가 그 分類群을 創設할 때 全的으로 또는 部分的으로 근거로 삼은, 이미 公表된 記載 또는 그림의 근거로 되었던 標本 등이 포함된다.

勸告 73A. 原來的 選定: 動物學者는 新種을 記載할 때 그 完模式으로서 單一 標本을 明白히 選定해야한다.

勸告 73B. 節次: 만약 어떤 動物學者가 어떤 새로운 公稱種을 그의 面前에 있는 標本에 의거함에 있어서, 그가 다른 著者에 의하여 잘못 同定되었다고 믿는 標本을 그것과 主觀的으로 關聯시킨다면, 그는 自己面前의 標本 中에서 그의 完模式을 選定해야한다.

勸告 73C. 完模式에 관한 데이터: 動物學者는 新種을 創設함에 있어서, 關聯이 있고, 알고 있는 限, 그 完模式에 관하여 적어도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公表해야 한다.

- (1) 크기;
- (2) 完全한 產地, 日字, 其他 完模式에 붙인 라벨에 記入된 데이터;
- (3) 性別이 있을 경우에는, 그 性;
- (4) 發生 段階, 또 그 種이 하나보다 더 많은 階級을 包含할 경우에는 그 階級;
- (5) 宿主의 種名,
- (6) 採集者名;
- (7) 그것이 자리잡고 있는 所藏 標本群과 그 採集番號 또는 登錄番號;
- (8) 現棲 陸上 種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採集된 곳의 미터로 表示하는 海拔 高度;

(9) 現棲 海産 種의 경우에는, 그것이 採集된 곳의 미터로 表示하는 海面으로부터의 깊이;

(10) 化石種에 있어서는, 그것의 地質時代와 層序上의 位置, 可能하면, 잘 確定된 地層面으로부터 위 또는 아래로 몇 미터되는가를 記述할 것.

勸告 73D. 副模式<sup>1)</sup>: 完模式에 라벨을 붙인 뒤에는, 模式系列의 各 殘餘 標本 (만약 있다면)에는, 原 模式系列의 構成要素를 明白히 判別하기 위해, “副模式”이라고 確實하게 라벨을 붙여야 한다.

勸告 73E. “複模式”의 誤解: 誤解를 피하기 위하여 動物學者는 “cotype”란 術語를 使用하지 말아야 한다.

第74條 後模式

(a) 標本の 選定: 만약 어떤 公稱種이 完模式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느 動物學者이던 “後模式”으로서 總模式들 中의 하나를 選定할 수 있다.

(i) 最初의 公表된 後模式의 選定은 그 標本の 地位를 固定한다. 그러나 만약 選定된 標本이 總模式이 아니라는 것이 證明되던, 그 選定은 無效이다.

(b) 그림에 의한 選定: 後模式으로서의 그림의 選定은 그 그림이 表示한 標本の 選定으로 다루어진다. 만약 그 標本이 總模式들 中의 하나라면, 後模式으로서의 選定은 命名法上의 觀點에서 有效하다.

(c) 選定은 個別的이어야 함: 後模式은 總體的인 記述로써 一括해서 選定해서는 안된다; 各 選定은 個個의 公稱種에 대하여 特別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또 그 對象으로서 그 種의 定義를 가져야 한다.

例: 어떤 特定한 著者가 記載한 모든 種의 模式系列에서, 그 著者가 決定한 라벨을 가지고 있는 標本, 또는 唯一한 殘存 總模式을 後模式으로 다룬다는 記事를 公表한 것은 後模式의 有效한 選定으로 되지 않는다.

勸告 74A. 既存 限定의 同意: 後模式을 選定함에 있어서 命名法의 安定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動物學者는 總體的으로 分類學的 種의 既存 有效 限定에 따라 始終一貫하게 措置해야하며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勸告 74B. 圖示된 標本: 動物學者는 後模式으로서, 만약 存在한다면, 公表된 그림이 포함되는 하나의 總模式을 선택해야할 것이다.

勸告 74C. 後模式에 관한 데이터: 後模式을 選定하는 動物學者는, 그것으로써 그 模式을 確認할 수 있는

1) cotype

1) paratypes

個體의 特徵들을 記載하는 한편, 勸告 73C에 列學된 데이터들을 公表해야 할 것이다.

**勸告 74D.** 여러개의 採集品の 總模式: 可能하면 後模式은 公共 研究機關의 採集品 中の 總模式 中에서 選擇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그 種의 가장 多數의 總模式을 所藏하고 있는 研究機關, 또는 그 公稱種의 著者가 研究한 採集品을 所藏하고 있는 研究機關, 또는 그의 模式들을 所藏하고 있는 研究機關에 있는 總模式들 中에서 選擇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勸告 74E.** 副後模式<sup>1)</sup>: 後模式을 選定하는 動物學者는 그 選定과 同時에 殘餘 總模式에 “副後模式”이라고 明白히 라벨을 붙여야 할 것이다.

**第75條 新模式:** 만약 紛失 또는 破壞에 의하여, 完模式, 後模式, 또는 總模式이 存在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限定과 條件에 따라 動物學者는 그 種의 “新模式”으로서 이같이 다른 標本을 申請할 수 있다.

(a) 承認되는 要件: 新模式은 再研究의 著作에 關聯해서만, 또 新模式이 命名法의 安定性을 위하여 必要할 경우 例外的인 狀況下에서만 選定되어야 한다.

(i) “例外的인 狀況”이란 말은 新模式이 어떤 복잡한 動物學上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꼭 必要할 경우, 이를테면 近似種들 中の 하나 또는 그 이상에 대하여 完模式, 後模式, 또는 總模式이 없기 때문에 그 近似한 種들에 대하여 同定이 混同되거나 疑心스러운 경우를 意味한다.

(b) 除外되는 要件: 新模式은, 그 自體의 目的을 위해서, 또는 管理者의 日常業務의 問題로서, 또는 有效名稱이건 同物異名이건 一般의으로 使用되지 않는 名稱을 가지는 種을 위하여 選定되어서는 안 된다.

(c) 適格인 條件들: 新模式은 다음과 같은 事項에 따라 公表될 때에만 有効하게 選定된다.

(1) 選定되는 新模式이 속하는 分類群을 分別할 수 있다고 著者가 생각하는 특징들의 記載, 또는 이러한 記載에 대한 文獻의 引用;

(2) 選定된 標本の 認定을 確實케 하기에 充分한 데이터와 記載;

(3) 모든 原模式材料가 紛失 또는 破損되었다고 믿는 著者의 事由; 또한 그것을 追究하는 데 使用한 方法;

(4) 記載 및 다른 出處에 立脚하여 新模式이 原模式材料라고 알려진 것과 一致한다는 증거: 단, 만약 公稱種이 좋은 特徵的인 形質을 가지지 않는 種 또는 未成熟 段階에 의거한다면, 그 新模式은 그 點에 있어서 그 原材料와 달라도 좋다;

(5) 新模式이 原模式產地와 事實上 거의 같은 곳 에서 왔다는 증거, 그리고 관계가 있다면, 原模式材料와 같은 地質 層序 또는 宿主種에서 왔다는 증거;

(6) 新模式이, 模式들을 保管하기 위한 適當한 施設을 가지고 研究用 採集品을 保存하며 研究을 위하여 그것을 손쉽게 제공하는 公認된 科學 또는 教育關係 研究機關의 財產이라는 것, 또는 公表 直後 그 財產으로 되었다는 것을 그 機關名을 引用하여 記述하는 것.

(d) 先取權: 本條의 條款들에 따라 어떤 公稱種을 위하여 公表된 最初의 新模式 選定은 有効하며, 그後の 選定은, 처음의 新模式이 紛失 또는 破損되지 않는 限, 有効하지 않다.

**勸告 75A.** 專門家와의 相議: 新模式을 選定함에 앞서, 動物學者는 그가 제안한 選定이 問題의 群의 다른 專門家로부터 異議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確認해야 할 것이다.

(e) 前에 選定된 新模式의 地位: 1961年보다 以前에 公表된 新模式 選定은 그것이 本條의 모든 條款을 充足할 때부터 効力を 發生한다.

**勸告 75B.** 發効: 1961年보다 以前에 有効치않은 新模式 選定을 公表한 動物學者는, 다른 動物學者가 같은 公稱 分類群에 대하여 新模式을 選定하기 前에, 그것을 有効하게 할 機會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勸告 75C.** 보다 前의 新模式의 優先: 만약 無効한 新模式 選定이 1961年보다 以前에 公表되었다면, 그때 選定된 標本이, 같은 公稱 分類群을 위한 新模式이 有効하게 選定될 때, 優先을 찾아야 할 것이다.

(f) 再發見된 模式 材料의 地位: 만약, 新模式의 選定後, 原模式材料가 있다는 것이 發見되면, 그 作은 審議會에 委託해야 한다.

## XVII. 動物命名法 國際審議會

**第76條 地位:** 動物命名法 國際審議會는 國際動物學會 議로부터 그 모든 權限을 委任받은 常設 團體이다.

**第77條 任務:** 審議會는 다음과 같은 任務를 맡고 있

1) paralectotype

다.

- (1) 國際動物學會議에 앞선 적어도 一年 동안 (或은 審議會가 認定한, 그것보다 짧은 期間內에) 本規約의 變更을 위한 어떤 제안을 연구하는 것;
- (2) 本規約의 明文化 또는 一部變更을 위한 勸告를 會議에 提出하는 것;
- (3) 會議과 會議 사이에 이러한 勸告를 具體化하는 宣言(이물대면 規約의 臨時 修正)을 提出하는 것;
- (4) 本規約의 變更을 포함하지 않는 動物命名法上の 문제에 관한 意見이나 指針을 提出하는 것;
- (5) 容認된 動物學上の 名稱과 著作의 公認 目錄과 破棄된 것들의 公認 索引을 編輯하는 것;
- (6) 그 活動報告書를 會議에 提出하는 것;
- (7) 會議가 決定하는 다른 任務를 遂行하는 것.

**第78條 權限의 行使:** 審議會는, 어떤 動物學者가 審議會에 適用을 照會할 때, 本規約의 條款들을 해석하고, 이런 해석을 動物命名法上の 어떤 문제에 適用하는 權限을 가진다.

- (a) **宣言:** 만약, 審議會에 맡겨진 件이 本規約으로는 適切하게 또는 完全하게 處理할 수 없는 事情을 가지고 있으면, 審議會는 宣言(規約에 대한 臨時 修正)을 發行하고 또 다음에 開催될 會議에 第87條에서 規定된 方法으로 이 修正의 採擇을 提案하여야 한다.
  - (i) 宣言은, 次期 會議가 그 原案 形式이거나 修正된 形式(때문에 規約은 自動的으로 修正된다)으로 그것을 비준하거나, 却下할 때까지 効力을 지속한다; 그래서 即時 그 宣言은, 歷史的 目的을 除外하고는, 全面的으로 廢棄된 것으로 생각된다.
  - (ii) 安定性과 普遍性을 위하여 措置하되, 그 全權行使[第79條]下에서, 그 특수한 件을 本規約의 適用으로부터 免除하며, 또 따라야 할 節次를 決定할 것
- (b) **意見:** 만약, 문제의 件이, 本規約을 個個의 名稱, 措置, 出版物에 關係있는 特殊한 狀況에 適用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審議會는 意見이라 하여, 決定을 내리며, 다음 어느 한 措置를 취한다.
  - (i) 本規約이 어떻게 適用 또는 해석되어야 하는가를 記述할 것; 또는
  - (ii) 安定性과 普遍性을 위하여 措置하되, 그 全權行使[第79條]下에서, 그 특수한 件을 本規約의 適用으로부터 免除하며, 또 따라야 할 節次를 決定할 것
- (c) **意見의 有効 日字:** 意見은 審議會의 裁定을 出版함과 同時에 効力을 가지며, 次期 會議에 報告되어야 한다.

- (d) **訓令:** 從前의 裁定을 完成하는 決定과 本規約의 自動條款下에서 要求되는 公式 文書를 訓令이라고 한다. 이것들은 意見과 같은 地位를 차지한다.
- (e) **解釋:** 모든 決定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明白히 記述된 것 以外の 結論들을 그 決定들로부터 그집어내서는 안된다.
- (f) **公式 目錄과 索引:** 意見에서 容認되거나 却下된 名稱과 著作은 關係 公式 目錄 또는 索引에 넣어야 한다. 이로써 關係 意見은 歷史的 目的을 除外하고는 全面的으로 廢棄된 것으로 생각된다.
- (g) **審議會 決定에 관한 會議의 再審:** 審議會의 어떤 決定을 部分修正 또는 却下하려는 勸告는, 적어도 一年前 (또는 審議會가 認定하는 이보다 짧은 期間)에 審議會에 豫告되지 않으면, 會議에서 審理되지 않는다.

**第79條 全權 行使:** 審議會는, 그 規程에 의하여 規定된 바와 같이 豫告가 滿期된 後, 만약 특별한 件에 規約을 適用하는 것이 安定性과 普遍性을 威脅하거나 混亂을 惹起할 것이라고 判定되는 경우에는 本章과 다음 章의 條款들을 除外하고, 本規約의 어떠한 條款도 適用하는 것을 中止하는 權限을 가진다. 이러한 混亂을 防止하고, 安定하고 널리 容認된 命名法을 강려할 目的을 위하여, 審議會는, 이런 全權行使下에서, 어떤 名稱, 模式 選定, 또는 다른 公表된 命名法上の 措置, 또는 어떤 出版物을 無効 또는 有効로 할 수 있으며, 또한 置換名稱을 有効로 하든지 創設할 수 있다.

- (a) **指導 原則:** 審議會는, 그 全權을 行使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指導되어야 한다.
  - (i) 뒤늦은 日字에 다른 意味로 出版된 같은 名稱의 使用을 有効하게 할 目的으로 除去된 名稱은, 先取權의 法則과 異物同名의 法則 두가지의 目的을 위하여 除去되어야 한다.
  - (ii) 같은 分類群에 주어진 뒤늦은 名稱을 有効하게 할 目的으로 除去된 名稱은 先取權의 法則의 目的을 위해서는 除去되어야 하지만 異物同名의 法則의 目的을 위해서는 除去되지 않아야 한다.
  - (iii) 만약 어떤 特別한 件에 관하여 審議會가 全權의 行使를 拒否한다면, 提出되는 意見書에 문제의 件에 使用될 名稱(들), 및 取해질 措置(必要하다면)를 特記해야 한다.

**第80條 審議中에 있는 件의 地位:** 어떤 件이 審議會의 審議中에 있는 경우에는 舊有의 用法은 審議會의 決

定이 出版될 때까지 維持되어야 한다.

**第81條 免除** : 本規約의 違反을 찾아내는 것, 또는 審議會에 提出된 申請書에 포함된 情報을 補充하거나 立證하는 것, 또는 權限의 範圍內에서 어떤 措置를 取하는 것 등, 審議會는 그 마음대로, 이런 것들 中의 어느 일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일들에 대한 義務는 지지 않는다.

**第82條 規程 및 細則** : 審議會의 會員, 그 任員, 選舉, 投票 節次, 會合 및 關聯된 事項 등을 다루는 規則들은 審議會의 規程 및 細則에 포함된다.

(a) 規程의 修正 : 規程의 變更은, 本規約의 修正 [第 87條]과 같은 方法으로, 審議會의 勸告에 따라, 會議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b) 細則의 修正 : 細則의 變更은 審議會의 規程에 定해진 節次에 따라 審議會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 XVIII. 本規約의 管理 規則

**第83條 表題** : 以上の 規則들과 勸告들의 表題는 “1958年 7月 런던 第15次 國際動物學會議에서 採擇된 國際動物命名規約”이다.

**第84條 發効 日字** : 本規約은 그 出版日에 効力을 發

生하며, 이로써 國際動物命名規約의 모든 舊版들은 廢止된다.

(a) 規約에 影響을 미치는 前의 決定 : 第15次 會議 以前의 會議에 의해 採擇된 規約에 影響을 미치는 모든 修正은, 여기서 再確認되고, 또한 여기서 表示된 것이 아니면, 次後에는 有效하지 않다.

**第85條 公式 原本의 用語** : 本規約의 公式 프랑스語 및 英語 原本은 効力, 意味, 및 權威에 있어서 同等하다. 만약 이들 두 原本 사이에 意味上의 差異가 있다는 것이 發見되면, 그 문제는 決定을 위하여 審議會에 委託되어야 하며, 審議會의 決定이 最終으로 된다.

**第86條 適用** : 本規約의 諸條款은 모든 動物의 名稱과 1757年보다 以後에 出版되고, 動物命名法에 影響을 미치는 著作들에 適用된다.

(a) 審議會의 前의 決定 : 本規約의 發効 日字 以前에 특별한 名稱 또는 著作에 관하여 審議會가 내린 決定은 審議會의 同義없는 破棄되어서는 안된다.

**第87條 規約의 改正** : 本規約의 改正은 國際動物學會議의 命名法分科會를 거쳐 提出되고 贊成된 審議會로부터의 勸告에 따라, 國際動物學會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第77條 및 78條a]. (完)